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저축보험	월납형	
	일시납형	1형
		2형

※ 이 상품의 월납형 및 일시납형(2형)의 판매채널은 범용(온라인채널 포함)으로 하며, 일시납형(1형)의 판매채널은 범용(온라인채널 제외)으로 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	2,3,5,7, 10, 15, 20년납 일시납	만 15세 ~ 80세	월납형 : 월납 일시납형 :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월납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보험료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2,3년	매월 50만원 이상
5,7,10,15,20년	매월 20만원 이상

(2) 일시납형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1)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①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된다.
- ②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한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로 한 날로 한다.
- ③ ‘(3)’ 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 ④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 ⑤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 납입보험료를 말하며,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3)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① 월납형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text{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times 200\% \\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② 일시납형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한다.

③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월납형에 한함)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하고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보험료는 월 계약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의 경우 추가납입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월납형에 한함) :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와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된 경우 :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을 더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납입보험료

나. ‘가’에서 ‘(1)’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와 ‘가’에서 ‘(2)’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를 이하 ‘연체보험료’라 한다.

다.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한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액과 다음의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 시점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월납형에 한함) :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제외)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된 경우 :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라.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마. 가입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하고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 이후 ‘2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다’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

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3) ‘(1)’ 및 ‘(2)’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① 월납형 :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일시납형 :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 미만의 금액인 경우

(4) ‘(1)’ 및 ‘(2)’ 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된다.

(6)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나. 정기중도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월납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일시납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하 ‘정기중도인출금액’이라 한다)만큼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이하 ‘정기중도인출서비스’라 한다.)

(2)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금액’은 다음의 범위 이내에서 선택가능하며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선택해야 한다.

① 월납형 :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3.0% 이내

② 일시납형 :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1.0% 이내

(4) 회사는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신청일 + 제2영업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

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에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한다.

- (5) ‘정기중도인출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6) ‘정기중도인출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가’의 ‘(1)’에서 정한 중도인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7)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중지한다. 다만, ‘②’ 내지 ‘④’에 따라 ‘정기중도인출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 ① 계약자가 ‘정기중도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 ② ‘정기중도인출금액’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경우
 - ㉠ 월납형 : 500만원 미만
 - ㉡ 일시납형 : 기본보험료의 3% 미만
 - ③ ‘정기중도인출금액’이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④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 이상인 경우
- (8)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한 이율로 계산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액계정에 적립한다.

다.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은 상환일부터 「상환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액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라. 회사는 월납형의 경우 약관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일시납의 경우 약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한다)를 산출하고, ‘나’에서 정한 이체금액을 일반계정

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월납형의 제1회 보험료 또는 일시납형의 기본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과 승낙일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월납형의 경우 제1회 보험료, 일시납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 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는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2) 월납형의 제2회 기본보험료

①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②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2영업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③ 「월계약해당일」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3) 월납형의 제3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①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②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한 금액

③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한 금액

(4) 추가납입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한 금액(다만, 추가납입보험료가 제1회 보험료보다 먼저 이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4.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월납형에 한함)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

간' 이라 한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된다. 다만,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에는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자동으로 중지되며, 납입일시중지기간 이후 '2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다'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은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나. '가'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한 특약보험료는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 투입되어 적립된다.

라.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마.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신청 1회당 12개월(신청시점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 횟수는 3회를 한도로 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

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월대체보험료가 해약환급금에서 더는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아.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다만,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재신청할 수 있다.

15.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월납형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의 납입기간 이내에는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월대체보험료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나. 일시납형

월대체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2차월 이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월납형에 한함)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17.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8.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액}}$$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정기중도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정기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text{정기중도인출금액}}{\text{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이 발생하기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9.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라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부터 적용한다.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운용실적이 매일 평가되어 계약자의 적립액에 즉시 반영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국내주식형>

- ①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09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②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17일)” 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③ 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큰사랑변액유니버셜보험의 “성장형(설정일 2005년 7월 5일)” 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④ 빅데이터국내주식형 : 국내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⑤ 코리아인덱스형 : 국내 상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및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코리아인덱스형(설정일 2010년 4월 30일)” 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국내주식혼합형>

- ① 스마트롱숏재간접형: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한 롱숏 전략을 주된 운용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② 주식혼합형: 주식(코스닥주식,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의 “주식혼합형(설정일 2007년 11월 20일)” 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국내채권형>

- ① MMF채간접형: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 CD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 또는 이러한 단기금융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② 단기국공채채간접형: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채권 투자에 있어 단기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단기국공채채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0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③ 베스트국공채채간접형: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채권 투자에 있어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베스트국공채채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0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④ 채권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및 채권형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설보험의 “채권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해외주식형>

- ① BRICs주식형: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펀드, 채권 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설보험의 “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② 글로벌배당인컴주식채간접형: 글로벌 시장 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

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1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③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전 세계 대표적인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까지 편입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④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전 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보험1704_알리안츠생명_A+GA의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7년 05월 1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⑤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⑥ 유럽주식재간접형: 유럽 지역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⑦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인도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10월 2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⑧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중국, 홍콩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11월 0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⑨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선진 및 이머징 시장의 소비자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에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높은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 ⑩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상장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혹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 ⑪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 미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우량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⑫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증시에 상장된 일등 기업 및 혁신기업과 고소비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소비재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⑬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 미국 주식시장 지수의 성과를 추종하기 위해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⑭ 글로벌착한기업ESG :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성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해외주식혼합형>

- ①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글로벌 시장 내 미국을 중심으로 하이일드 채권, 전환사채,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인컴

앤그로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2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해외채권형>

- ①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전세계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채권의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여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1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②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글로벌 고수익 채권 또는 이러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③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④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해외기타>

- ①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또는 지수 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주기적으로 펀드 내 편입 자산을 선별/교체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설정일 2014년 05월 0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②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글로벌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펀드 내 글로벌인덱스를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투자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글로벌인덱스는 KOSPI200Index, S&P500Index, HSCEI로 구성되며, 위험자산의 변동성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은 0%이상 10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설정일 2012년 04월 2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③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 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설보험의 “팀챌린지자산배분C형(설정일 2015년 08월 0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④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 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설보험의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설정일 2016년 08월 0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 ⑤ 골드 :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선물과 골드, 귀금속 채굴 및 가공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과 해외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해외부동산형>

- ① 글로벌리츠형: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리츠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리츠형(설정일 2006년 4월 2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국내외주식혼합형>

- ①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전 세계 이머징 마켓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50%까지 편입하고, 국내 채권 펀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4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으로 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국내외채권혼합형>

- ① 혼합간접형: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해외 주식형펀드에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한다.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보험의 “혼합간접형(설정일 2005년 6월 2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국내외기타>

- ① 탐픽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량적 모델 및 정성적인 판단을 활용하여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펀드로서,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ETF),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2) ‘(1)’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3) ‘(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다.
- (4) ‘(1)’의 ‘(가)’의 ‘<해외기타>’의 ‘③’ 내지 ‘④’의 팀챌린지자산배분형 펀드는 각 펀드별로 다른 운용회사에 의해 운용된다.
- (5)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인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운용보수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6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9890411%)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9616438%)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315068%)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8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7684932%)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2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1520548%)
토탈리턴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8780822%)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8780822%)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1794521%)
BRICs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56164%)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1917808%)
밸류고배당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1780822%)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3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4534247%)
글로벌배당인컴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글로벌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2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1520548%)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단기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9616438%)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구분	운영보수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9616438%)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1232877%)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1780822%)
MMF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8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7684932%)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54794520%)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315068%)
스마트롱숏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315068%)
유럽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1780822%)
탐챌린지자산배분C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315068%)
인공지능탐챌린지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315068%)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빅데이터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코리아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2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4397260%)
골드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8904110%)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4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4945205%)
글로벌착한기업ESG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2328767%)
탐픽스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4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4931507%)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다음을 한도로 한다.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1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2739726%)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16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438356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506849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2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68493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8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2191781%)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8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2191781%)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글로벌 인덱스 리스크 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547945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글로벌다이나 믹멀티에셋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547945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2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68493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밸류 고배당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1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2739726%)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글로벌 배당 인컴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인컴 앤 그로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차이나 포커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인디아 포커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단기국공채재 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베스트국공채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글로벌다이나 믹채권재간접 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네비게이터주 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MMF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글로벌하이일 드 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36986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베트남그로스 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스마트롱숏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유럽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36986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글로벌인프라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팀챌린지 자산배분 C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6849315%)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2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68493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인공지능 팀챌린지 자산배분 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6849315%)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2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68493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월드와이드 컨슈머 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2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47945%)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글로벌 테크놀로지 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36986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빅데이터 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6849315%)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미국그로스 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36986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글로벌리치투 게더 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36986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코리아인덱스 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12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3287671%)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34247%)
골드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6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643836%)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미국주식인덱 스(환오픈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36986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글로벌착한기 업ESG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1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410958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탐픽스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1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2739726%)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410959%)

- (3)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 및 ‘(2)’ 에서 정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 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별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각 펀드별로 투입되는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중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된다. 다만, 각 펀드별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 (3) ‘(2)’ 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 을 선택한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장’ 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2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의 ‘나’ 에서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4)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액의 이전 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 (5) ‘(4)’ 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자는 ‘2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의 ‘나’ 에서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이 60%미만이 되도록 펀드적립액을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펀드적립액을 이전 하더라도 ‘2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의 ‘나’ 에서 정한 펀드의 이전 후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이상이어야 한다.
- (6)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나’ 의 ‘(3)’ 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를 선택하거나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펀드적립액을 이전할 수 있다.
- (7) 회사는 ‘(4)’ 에 따른 펀드적립액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 의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만, 이전하는 펀드적립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

- (8)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적립액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향후 펀드적립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 펀드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된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자동재배분된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자는 ‘2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을 60%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 또한, ‘2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정한 펀드의 펀드자동재배분 후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미만인 경우 해당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할 수 없다.
- (4)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5)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재배분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바. 펀드자동전환옵션

-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형 또는 MMF재간접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이 경우 특별계정적립액이 계약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액 전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로 자동이전 한다.
- (2) 계약자는 최초로 펀드자동전환옵션 선택시 110%에서 200% 범위내에서 10% 단위로 목표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다.
- (3) 목표수익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대비 특별계정 적립액의 비율을 말한다.
- (4) 회사는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또는 MMF재간접형으로 자동이전되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 (5) 목표수익률 도달시 펀드자동전환옵션은 해제되며, 이후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재신청시 선택할 수 있는 목표수익률은 직전 선택하였던 목표수익률 이상을 10%단위로 재신청해야 한다.
(예 : 직전 달성하였던 목표수익률이 120%인 경우, 재신청시 130%이상 선택 가능)
- (6)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전환옵션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7)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다.
- (8)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며, 펀드자동이전시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 (9)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4)’에 따른 펀드적립액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전요청일부터 펀드적립액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펀드자동전환옵션은 실행되지 않는다.

사.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1)’에 따른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한다.

아.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자.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①’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차.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카.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⑤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된 경우
-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 (3) 회사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도 월대체보험료에 의해 계약자적립액이 감소되므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타.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③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④ ‘①’ 내지 ‘③’ 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 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 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1.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13.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

(3) ‘24.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정기중도인출서비스 포함)이 있는 경우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 ‘(1)’에 따라 자금이체를 할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2.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한다.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액 등이 감소할 수 있다.

2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가.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월납형의 경우 해당 경과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 일시납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계약유지보장 기준 보험료’라 한다) 이상인 경우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이를 ‘계약유지보장’이라 한다.

나. ‘계약유지보장’은 가입시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할 수 없다.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아래에서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한다. 계약자적

립액의 인출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미만이 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펀드
MMF재간접형 펀드, 채권형 펀드,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

다.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유지보장’은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 (1) 해당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의 금액인 경우
- (2)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나’에서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 (3) 펀드적립액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나’에서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라. 계약자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된 이후 ‘계약유지보장’의 재신청은 할 수 없다.

마.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될 경우 계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4.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적용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는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시점	장기유지보너스
계약해당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0.5%
계약해당일로부터 만 10년이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0.5%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산한다.

다. 회사는 ‘가’ 내지 ‘나’ 에 따라 적용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용시점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 투입한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으로 적립된다.

라.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은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시점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지급한다.

25.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

- (1) 월납형 : 기본보험료의 5배
- (2) 일시납형 : 일시납보험료의 10%

나.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장계약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액 변동에 관한 사항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약환급금

다.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 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월납형 및 일시납형(2형)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온라인채널 포함)으로 한다.
- (2) 이 상품의 일시납형(1형)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온라인채널 제외)으로 한다.
- (3) ‘(1)’ 및 ‘(2)’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9%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4)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라.’ 내지 ‘바.’에도 불구하고 ‘(1)’ 및 ‘(2)’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선택 및 변경, 펀드자동재배분, 펀드자동전환옵션이 제한될 수 있다.

마.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자

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① 월납형 :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 (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

일시납형 :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약

②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③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2)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며, 종신연금형 연금연액은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의 피보험자 나이와 전환후 연금개시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3)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은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4)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5) ‘(3)’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되는 연금연액은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과 「전환전계약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 중 큰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다만, 장기요양 및 6대질병 관련 위험률은 전환시점의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6) 전환일시금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으로 하며, 전환시점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로 한다.

바.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①’ 내지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은 할 수 없다.

① 월납형 :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 (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

일시납형 :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약

②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③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2)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의 위험보험료는 전환전계약 가입시점의 피보험자 나이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3)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은 전환전계약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4) 전환일시금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으로 하며, 전환시점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로 한다.

사.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자.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서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제외한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타.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